

정치외교학부 국외수학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1. 목적

이 지침은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학사과정생의 본교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학점인정대상

국제교환 또는 방문의 형태로 외국대학의 정규 학위 교과과정에서 전공과목을 수강한, 정치학전공 혹은 외교학전공 학사과정생을 대상으로 한다.

3. 학점인정신청시기

- 1) 학점인정신청시기는 매년 4월, 10월에 연 2회 실시하되, 그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학부 및 각 전공 홈페이지에 공지)
- 2) 학생의 수학 완료 직후 학기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졸업예정학기 이전에는 신청해야만 한다.

4. 학점인정신청절차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반드시 아래 서류를 소속전공 조교실에 제출해야 한다.

- 1) 학점인정신청서 1부
- 2) 수학한 대학에서 발행한 성적표 1부
- 3) 상기한 영문성적표의 국역본 1부
- 4)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5) 교과목 강의계획서 각 1부
- 6) 교과목의 수업 시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5. 학점인정기준

- 1) 「학칙」 제74조 1항에 따라, 1학기 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며, 실험·실습·실기 및 체육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2) 유럽대학에서 국외수학하고 ECTS(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 유럽 공통 학점 교환제도) 단위로 이수학점을 부여받는 경우, 「학칙」 제74조 3항과 사회과학대학의 규정을 따라 ECTS를 활용한 국외수학 학점인정표를 따른다.
- 3) 단, (1)과 (2)에도 불구하고, 교과목당 최대 인정 학점은 3학점까지로 한다.

6. 전선인정기준

- 1) 수학한 외국대학의 정치외교학부에서 개설한 과목을 전공주임의 승인을 거쳐 전공선택으로 인정하며, 다른 교과목의 경우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 2) 본교에서 유사교과목을 기수강한 경우, 전공필수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전공 및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 3) 제2전공의 전공 구분 인정은 별도 양식을 통하여 해당 전공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2025년 04월 01일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장 안도경

